상품특징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5천만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1)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이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가능) 이하인 고객*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주1)

주2)

-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입 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이상 입주예정자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제2금융권 전세자금 (보증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 되는 날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②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③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5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5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 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 (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2년 이내(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기한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초과 불가, 기한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2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2년 1개월) 추가연장 가능(최장 10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10년 5개월) 추가 연장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2%p(연장기간이 1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0.1%p) 금리가산 (단, 자산심사신청일 24.7.30 이전인 경우 0.1%p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이자계산방법>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시상환대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혼합상환: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쉐어하우스: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기존 은행재 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 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 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추가대출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 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 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미성년자) 이상·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

일반

• 기본금리: 연 2.5% ~ 연 3.5%(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인 경우에는 아래기본금리에서 0.2%p인하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 하	1억원 초과
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2.5%	연 2.6%	연 2.7%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6천만원 초과7천5백만원 이하(신 혼가구)	연 3.3%	연 3.4%	연 3.5%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 30%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최대 0.5%(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0%, 다자녀 가구는 0.7%)까지 적용 가능합니다.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0.2%p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각 연1.0%p한부모가구: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인 이상): 연0.7%p, 2자녀가구(미성년자녀 2인): 연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0.3%p(단,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0.2%p부동산전자계약:연0.1%p(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단,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1.1이후인 경우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해당 우대금리 적용)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적용(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 연0.2%p
- 적용금리: 최저 연 1.3%(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4.5% (가산금리 적용 시)
-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신혼가구

• 기본금리: 연 1.9% ~ 연 3.3%(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인 경우에는 아래기본금리에서 0.2%p인하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원 초과1억 5천 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1.9%	연 2.0%	연 2.1%	연 2.2%
	2천만원 초과4천 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6천 만원 이하	연 2.6%	연 2.7%	연 2.8%	연 2.9%
	6천만원 초과7천 5백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연 3.3%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다음 중 해당되는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 30%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최대 0.5%(다자녀 가구는 0.7%)까지 적용 가능합니다.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단,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단,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1.1이후인 경우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해당 우대금리 적용)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적용(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 연 0.2%p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4.3% (가산금리 적용 시)
-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최종 자산심 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 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용조건리스트 펼치기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

기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잔액)의 10%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2%p(연장기간이 1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 이하인 경우연0.1%p) 금리가산 (자산심사신청일 24.7.30 이전인 경우 연0.1%p 가산)▶ 연장시마다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 재판정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가산금리 0.3%p 금리가 가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기금의 구입 및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내용>□ 대출한도 축소<기존고객적용여부>부 (2025.06.28 이후 계약 체결 건 적용)<시행일 경내용>□ 대출기간 중 연장횟수 제거□ 기한연장시 10% 미상환 가산금리 부과방식 변경<기존고객적용여부>여 ----<변경내용>금리우대 적용기한 추가<기존고객적용여부>부 (2025.3.24 대출신청건부터 적용)<시행일 >2025.04.10------<변 경내용>□ 기본금리 인상 및 지방소재 0.2%p 금리인하 변경전 □ 일반: 연 2.3% ~ 연 3.3%, 신혼가구: 연 1.7% ~ 연 3.1% 변경후 □ 일반 : 연 2.5% ~ 연 3.5%, 신혼가구 : 연 1.9% ~ 연 3.3%<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 <변경내용>□ 금리우대 적용가능한 상한 금리 설정□ 자녀 금리우대항목 중복적용 불가 및 최대 적용기한 설정(변 경 전) 다자녀/2자녀/1자녀 금리우대 타 금리우대와 중복적용 가능(변경 후) 다자녀/2자녀/1자녀 금리우대 타 금리 우대와 중복적용 불가 및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기존고객적용여부>부<시행일>2025.03.24-------전 - 2년 변경 후 - 2년 이내(임차종료일 초과 불가)<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변경내용>□ 유의사항 내용 변경 (변경 전) 3회차 기한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변경 후) 기한연장시마다 소득을 재심사<기존고객적용여부>부 -----<변경내용>□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금액 변경□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신청기한 연장 및 적용기한 제한<시행일>2025.01.01<기존고객적용여부>부------연 1.5% ~ 연 2.7% 변경후 🗆 일반 : 연 2.3% ~ 연 3.3%, 신혼가구 : 연 1.7% ~ 연 3.1% <시행일 >2024.08.16<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시 적용 : 연 0.2%pㅁ 고객 안내 유의사항 및 기타 내용 추가▶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 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2%p (자산심사신청일 24.7.30 이전인 경우 0.1%) 금리가 가산됩니 다.▶ 3회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 재판정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가산금리 0.3%p 금리가 가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 실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기금의구입 및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ㅁ 고객 준비서류 변경 전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변경후 - 전입세대확인서<시행일>2024.07.31<기존고객적용여부>부-----

시기 완화 변경전-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후-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	등본상 전 ^원 이하인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간 연장 변 고객적용여
>□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변경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변경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박하□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금리구간 신설 일반 : 연 2.7%~연 2.9% 신혼 : 연 2.4%~연 2.7% >2023.10.06<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백만원 이
	이저 시그
분- 변경후 : 보증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 되는 날 이전 신규분<시행일>2023.09.05<기존고객적용여부 변경대용/미준 과거 1년이 되는 날 이전 신규분<시행일>2023.09.05<기존고객적용여부	>부
리 인상 변경전 \square 일반 : 연 1.8% ~ 연 2.4%, 신혼가구 : 연 1.2% ~ 연 2.1% 변경후 \square 일반 : 연 2.1% 2.7%, 신혼가구 : 연 1.5% ~ 연 2.4%<시행일>2023.08.30<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	
<변경내용>□ 갱신만료 임차인 지목전세자금 대출업무 특칙 운용 종료<시행일>2023.08.01<기존고객적용여부>부	
<변경내용>□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	대(0.1%)
적용 기준 변경- 변경전 : 폐지- 변경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2지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 변경전 : 수도권 ⇒ 2억 2천만원 이내, 수도권 이외 지역 ⇒ 1억 8천만원 이내-수도권 ⇒ 3억원 이내, 수도권 이외 지역 ⇒ 2억원 이내<시행일>2023.02.10<기존고객적용여부>부	바녀 이상 변경후 :
우대(0.1%) 적용 기준 변경- 변경전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변경후 : 폐지<시행일>2023.0 존고객적용여부>부	
<변경내용>□ 대출신청 자격 변경- 변경전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주1)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록 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ㅇ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ㅇ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ㅇ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후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주1)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바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2021년 기준, 3억만원) 변경후: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2022.12.31분까지 변경후: 2023.12.31신규 접수분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변경전: LH, SH, 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LH, SH, 공공임대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LH, SH, 공공임대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시행일 >2023.01.01	·고 주민등 대출신청 택에 중 1인 1객- 변경 개월 이나 배우자 호 택 2천 5백 신규 공 내리츠 발
	·도-변경
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6억원-변경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임차보증금 경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변경후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시행일	
>2022.10.04<기존고객적용여부>여	

객적용여부>부<
변경내용>□ 추가대출 특칙 신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제외)을 이용중인 고객으로서 2020.8.1~2021.7.31 기간중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추가대출시 임차보증금과호당대출한도에 대해 아래 '특칙'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2023.7.31 까지 한시운용)-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5천만원 이내, 수도권외 2억 5천만원 이내-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억 8천만원, 수도권외 1억 2천만원* 기존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 경우'특칙' 기준을 적용한 추가대출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불가□ 추가대출 요건변경 변경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불가함 변경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일>2022.08.01<기존고객적용여부>여
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시행일>2022.06.15<기존고객적용여부>부
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 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 >2022.05.20<기존고객적용여부>여
금액 변경 변경전: (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변경후: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사행일 > 2022.01.01<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변경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5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시행일>2021.04.30<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 2020.12.31까지 적용 변경후 □ 2021.12.31까지 적용<시행일>2021.01.01<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시행일>2021.01.01<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후 🗆 일반 : 연 1.80% ~ 연 2.40%<시행일>2020.08.10<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
<변경내용>□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
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2020.07.17<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
<변경내용>□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대상자 확대 변경전
: - LH, SH,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만 34세이하 & 소득 2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신설
> 변경후 :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만 34세이하 & 소득 2천만
원 이하 세대주-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시행일
>2020.07.17<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 변경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시행일>2020.07.17<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
<-
2.30% ~ 연 2.90% 변경후 \Box 일반 : 연 2.10% ~ 연 2.70%<시행일>2020.05.18<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
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요건 변경 변경전 : 청년가구(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
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0.5% 변경후 : (삭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반영<시행일>2020.05.08<
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대상주택 추가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
츠 1~15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
이 취급가능*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
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시행일>2020.03.09<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금감원 개선의견 반영)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
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
건 대출접수일(년 월 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시행일
>2020.03.09<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소비자보호부 제도개선 반영) 주택도시보
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합니다.<시행일>2020.03.09<기존고객적용여부>적
용<변경내용>□
고객준비서류 추가(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매뉴얼 반영) 전입세대열람내역(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의 경우)<시행일>2020.03.09<기존고객적용여부>적용
<변경내용>□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방식 변경 변경전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를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은행에 매월 통보☞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
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시행일>2020.02.10<기존고객적용
여부>미적용<변
경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변경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1호, 경기도시공사, 청년
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호 변경후 : LH, SH, 공공임대리츠 1~15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
주택리츠 1~2호<시행일>2020.02.10<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
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
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시행일>2020.01.17<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변경내용>□ 부부합산 순자

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2억8천만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시행일 >2020.01.17<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년 2자녀가구: 0.3%,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5% 변경후 - 미성년 1자녀가구: 0.3%, 미성년 2자녀가 구: 0.5%, 다자녀(미성년 3자녀이상)가구: 0.7%<시행일>2019.12.31<기존고객적용여부>시행일 이후 신규접수 분부터 적용하나. 2019.12.31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변경 우대금리 적용가능<변경내용>□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 변경전 □ 수도권: 2억원, 수 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변경후 - 수도권: 2억원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시행일 >2019.12.31<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연장)<시행일>2019.12.31<기존고객적용여 부>적용------- 변경내 용> 다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 변경전 다 2019.12.31까지 적용 변경후 다 2020.12.31까지 적용< 시행일>2019.12.31<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 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시행일>2019.12.13<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변경내용>□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 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 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시행일>2019.11.08<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 용-----<변경내용>□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 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2억8천만원)ㅁ 자 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 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 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 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 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시행일>2019.9.30<기존고객적용여부>미적용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상품 시행일: 2015.01.02유효기간: 2025.07.04 ~ 2026.12.31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 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기한의 이익이란?>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은행과의 대출거 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단, 협약에 의한 채 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 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입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口 新·舊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 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口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다 최근 5년 주소변동 이 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ㅁ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 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 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 목적)-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 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 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口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 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722-2호(2025.07.04)] / 유효기간 (2025.07.04~2026.12.31)